

중국의 법률시장개방

정 용 상

<목 차>

1. 머리말
2. 중국법률시장개방을 위한 입법상황
3. 중국의 WTO가입과 법률시장개방
4.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의 현안
5. 중국의 법률시장개방 대응책
6. 결 론

1. 머리말

WTO(World Trade Organization)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경개념이 약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무역·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법률시장 역시 WTO와 OECD의 주요의제에 포함되면서 특히 서방국가와 다른 법조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등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미 WTO가입과 동시에 법률시장을 개방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법률시장개방을 유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법률시장에 대한 최초의 양허안 제출시점인 2003년 3월 31일 정부는 개방안을 확정하여 WTO에 제출하였다. 몇 차례의 시장개방 협상을 거쳐 2006년

2 比較法學 (第16輯)

1월 1일부터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법률시장은 실질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 EU(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우리나라의 외국법자문변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시장의 개방을 요구해 왔다. 특히 미국과 호주는 FLC의 개방수준을 넘어 외국법자문변호사가 국내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제법률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EU의 기본입장과는 별도로 양자협상을 통하여 동업 및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국가가 FLC 수준의 개방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국내 FLC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동업 및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협상을 통하여 단계적·순차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¹⁾

최근 법무서비스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국제거래업무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법무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one stop서비스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국제간의 인수합병, 지적재산권, 신금융상품, 경쟁법 등 기업관련법과 국제거래의 증가는 보다 정교한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무서비스 환경의 변화는, 법정에서의 역할을 주로 하는 소송변호사와는 그 업무의 성격이 다른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변호사를 출현시켰는데, 이들은 법정에서의 역할을 주로 하는 소송변호사와 대조된다. 소송변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법률자문업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법무서비스의 국제교역이 촉진되었으며 외국법 자문활동도 활성화되었다.

1) “빛장 풀리는 법률시장(12)”[전문가좌담회], 매일경제신문 2003년 8월 29일, 37면 참조

법무서비스의 국제적 경쟁에 관하여 최근 세 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첫째, 빅5라 불리는 거대한 국제회계사무소가 복수전문직간 동업(multidisciplinary practice: MDP)를 통하여 법무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둘째, 서구의 법률회사가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해외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WTO 등에서 전문직서비스에 대해 국제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1992년부터 외국인의 투자와 무역의 증대로 인한 법률수요의 폭증으로 외국법률사무소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법률시장을 개방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 WTO가입에 관한 실무협상을 끝내고, 그 가입이 임박할 무렵, 중국정부의 유관기관이나 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개방문제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법무부는 외국변호사제도시찰단을 파견하고, 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한 전국규모의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한 심층적 연구를 하였다.²⁾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률시장개방 그 자체는 당연히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곧 최종적인 개방협상을 해야 할 시점에서, 인접국인 중국의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입법례와 그 대응과정상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법무서비스시장 개방의 영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 개방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시아존의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현

2) 중국의 WTO가입은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 협상을 마치고, 2000년 5월 19일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EU와의 협상을 끝내므로써 실현되었다. 중국 법무부는 WTO가입협상의 내용 중에 서비스시장개방의 일환으로 법률시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999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독일과 영국에 시찰단을 파견하여 변호사관리제도를 연구하였고, 중국의 전국변호사협회는 2000년 1월 8일부터 2일간 “WTO가입과 중국변호사업”이라는 주제로 전국단위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총력전의 양상으로 법률시장개방을 위한 대비를 하였다.

4 比較法學 (第16輯)

황을 분석하여,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그 보호 및 방어대책을 연구하므로써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2. 중국법률시장개방을 위한 입법상황

1) 입법형식

중국은 변호사법이나 외국법률사무소에 관한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외국법률사무소임시규정과 그 보충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률사무소설립세칙 등과 같은 하위법규에 의하여 외국법률사무소의 설립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외국법률사무소임시규정 제6조는 상호주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률사무소의 설립 및 업무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2) 자격요건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에서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로서 원자격취득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업무능력을 가졌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외국법률사무소임시규정 제8조 제4항은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설립신청시 분사무소에 파견할 변호사의 자격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외국법률사무소구체규정 제3조 제4항은 파견 변호사의 자격증과 개업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변호사는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법률사무소구체규정 제5조 제1항은 외국법률사무소가 시범도시가 아닌 도시나 시범도시 중 2개 도시에 분사무소 설립신청을 한 경우 시범도시로 변경하거나 하나의 시범도시로 확정할 것을 통지한 후 분사무소의 설립에 대하여 재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재심 과정에서 당해 법률사무소가 상당한 실력과 업무능력을 가지고 외자유

치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사무소에서 법률업무를 담당할 자는 원자격취득국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상당한 업무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3) 법률사무소설립

외국법률사무소가 중국 내에 분사무소를 설립하려면 주무기관인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설립신청은 직접 해야 한다. 외국법률사무소는 설립신청서류 접수 후 60일 내에 법무부로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외국법률사무소입시규정 제8조), 위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마쳐야 하며(동 입시규정 제9조), 또한 외국법률사무소는 위 등기일로부터 7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의 사법청에 등기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외국법률사무소구체규정 제5조 제3항). 그 후 분사무소의 상주변호사는 매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중국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외국법률사무소 분사무소의 상주변호사등기방법 제4조 내지 제6조).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는 시범도시인 북경, 상해, 광주, 심천, 해구 중의 1개 도시로 제한된다(외국법률사무소구체규정 제5조 제3항).³⁾ 이와 같이 분사무소의 설치가 1개의 시범도시로 제한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외국변호사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외국법률사무소의 본사무소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외국법률사무소유관사무통지 제4조), 해석상 외국변호사가 분사무소의 업무활동지역을 벗어나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사무소에서 상주하는 외국변호사나 외국인 및 중국인의 인원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3) 중국 법무부는 2000. 7. 25. 홍콩특별행정구를 필두로 중국에 개설할 수 있는 외국법률사무소 분사무소를 복수로 허가하고, 홍콩변호사에 대하여 중국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법률서비스시장개방확대방침을 시사하였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00. 7. 26).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명칭은 “00법률사무소 00(도시명)분사무소”라고 정함으로써 외국법률사무소의 고유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외국법률사무소임시규정 제10조). 이와 같이 외국법률사무소가 중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위주로 업무활동을 하려면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외국법률사무소임시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외국법률사무소가 자문회사, 商務會社 등을 설립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었다면 분사무소 설립 신청시에 자문회사, 상무회사 등의 말소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외국법률사무소구체규정 제4조).

4) 자격표시

외국법률사무소임시규정이 제정되기 훨씬 전인 1981년 사법부의 외국변호사의개업불허연합통지(司法部, 外交部, 外國專門家局, “關於外國律師不得在我國開業的聯合通”)에 의하면, 외국변호사가 주무관청의 허가 및 등록을 거쳐 중국의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거나 강연활동을 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고 ‘00국변호사’, ‘법률고문’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행 중국법은 외국변호사사무소임시규정 및 하위규정에 분사무소의 설립에 관한 사항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변호사의 자격표시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자격취득국의 변호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5) 업무범위

중국은 업무범위에 관하여 법률사무가 허용되는 영역과 금지되는 영역을 공히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법률사무가 허용되는 영역에 관하여는 ① 원자격취득국의 법률, 유관국제조약, 국제상사법률 및 국제관례에 관한 자문 제공, ② 당사자나 중국법률사무소의 위탁에 의한 원자격취득국의 법률사무 처리, ③ 외국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법률

사무소에 위탁, 중국 내에서의 법률사무 처리로 한정하고 있다(외국법률사무소임시규정 제15조).

또한 법률사무가 금지되는 영역에 관하여는 ① 중국법률사무의 대리, ② 당사자에 대한 중국법률의 해석, ③ 중국법률이 외국인에게 불허하는 기타 업무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 임시규정 제16조).

6) 동업 및 고용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는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외국법률사무소임시규정 제17조), 중국법률사무소와 연합기구를 설립할 수 없으며, 기타 각종 형식의 회사나 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외국법률사무소유관사무통지 제3조). 여기에서 “연합기구”라 함은 중국법률사무소와 외국법률사무소가 업무상 협력관계를 넘어 자본을 출자하고 일정한 조직을 갖추며 수익과 손해를 분담하는 합동법률사무소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국은 외국 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와 중국 변호사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와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7) 중국법 자문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는 중국법률사무와 중국법률에 대한 해석이 금지되지만 외국법률사무소와 중국법률사무소 사이에 업무상의 교류와 협력은 가능하므로,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가 업무수행중 중국법 자문이 필요한 경우 중국법률사무소와 협력관계를 맺어 위탁처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8) 중국내 취업

외국변호사가 중국의 정부기관이나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관서의 허가와 등록을 거쳐야 하고, ‘00국변호사’, ‘법률고문’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법률전문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⁴⁾ 이와는 달리, 중국에 분사무소를 개설한 외국법률사무

소 소속 외국변호사는 원자격취득국의 변호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중국은 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표시와 관련하여 중국법률사무소에 고용된 외국변호사와 외국법률사무소 소속 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표시를 이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중국은 법률사무소가 업무활동을 개시한 역사가 일천한 데다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법률사무소가 고비용의 외국변호사를 채용하기보다는 국제법률사무가 생길 때마다 외국법률사무소와 업무협력관계를 맺어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9) 입국규제

외국법률사무소분사무소 구성원의 출입국 및 거주 등에 대한 규제는 출입국관리법규에서 정하고 있는데, 연간 의무체류기간 및 국가별 취업입국허용자에 대한 인원할당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분사무소설립신청시 상주하기로 한 변호사 이외의 외국변호사는 취업입국이 제한된다.

먼저, 분사무소의 외국변호사나 외국인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취업(Z)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해야 한다. 취업비자에는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출입국할 수 있는 복수취업비자와 1회만 출국할 수 있는 단수취업비자가 있다. 취업자는 본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한 거류증의 발급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신청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실시세칙 제16조, 제18조). 그 외에도 취업자는 노동부에 외국인취업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외국인중국주재취업관리규정 제8조).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또는 대표가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

4) 司法部, 外交部, 外國專門家局, “關於外國律師不得在我國開業的聯合通知” 「司發公字」第287號, 1981.

구의 등록증 및 작업증(工作證) 사본을 제출하여 취업비자와 취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외국인의 중국주재취업관리사무유관문제에관한통지 제2항), 거류증은 이에 앞서 발급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거류증을 받은 경우 재입국비자를 받아 출입국이 가능하므로 연간 의무 체류기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외국법률사무소 분사무소의 설립허가신청시 외국변호사의 자격증 등이 첨부되고 있는 점,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에게만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격인정자 이외의 외국 변호사는 분사무소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의 방문비자는 발급절차가 간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도 3개월로서 비교적 긴 편이므로, 다수의 인원을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에 투입하여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후에 입국한 분사무소의 변호사가 전술한 취업비자절차를 밟기 보다는 방문비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직무감독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관리기관은 법무부(변호사공중국 외국변호사관리처)이고, 법무부는 분사무소 소재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법무국(변호사관리처)에 감독관리권한을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분사무소를 감독관리한다(외국법률사무소임시규정 제19조, 외국법률사무소구체규정 제6조 제3항). 감독관리의 내용은 ①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가 중국변호사를 고용하였는지 여부, ② 분사무소의 업무범위가 외국법률사무소임시규정상외의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 ③ 분사무소의 연도업무보고의 심사, ④ 기타 사항이다(외국법률사무소구체규정 제6조 제3항).

한편, 외국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는 매 등록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5일전에 분사무소 소재지 법무국에 연도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보고내용은 ① 등록회계사가 서명한 재무보고, 연도재무수지상황, ② 분사

무소의 납세보고서, ③ 분사무소의 인원변동상황(수석대표, 상주외국인, 현지에서 채용한 중국인의 변동상황 포함), ④ 분사무소의 업무활동상황, ⑤ 분사무소와 중국법률사무소간의 교류협작상황, ⑥ 분사무소와 그 구성원의 중국법률준수상황 및 법규위반상황이다(외국법률사무소구체규정 제7조). 지방의 법무국은 분사무소의 연도보고를 심사하여 종합평가를 한 후 법무부에 연도업무보고서와 서면심사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외국법률사무소구체규정 제7조).

법무부와 지방정부의 법무국은 중국법규 및 외국법률사무소입시규정을 위반한 분사무소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처분(15일 내지 3개월), 설립허가취소처분 등을 내릴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공상행정관리법규에 의거하여 벌금, 불법소득의 몰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 입시규정 제23조, 외국법률사무소구체규정 제8조).

3. 중국의 WTO가입과 법률시장개방

1) 법치사회 구현

중국 법조계에서는 WTO가입이 변조인의 지역확장과 법조활동의 다양화로 인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하므로써, 후진법치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법률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호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1949년 중국건국 후의 장기적 계획경제의 영향으로 人治觀念이 法治觀念에 앞서므로 인하여 사법제도는 부패되고 소송의 결과가 人的 關係(판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⁵⁾ 법률의 집행과 적용에 있어서 현저한 불공정성을 노정해 왔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WTO가입은 '依法治國 ...'이라는 기본방침의 구현으로 법치주

5) 段正坤, "打開大門, 迎接挑戰", 「中國律師」, 2000. 2, 35面.

6) 範成蘭, "面對WTO, 中國律師準備好了嗎", 「律師世界」, 2000. 2., 3面.

의의 이념이 사회생활의 전반에 삼투됨으로써⁷⁾ 중국의 법 집행 및 법 적용의 개선과 완비를 촉진하게 되어 법률문화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변호사의 위상과 업무의 확대

사회주의계획경제치하의 중국변호사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매우 열악하였으며, 그 자격이나 법지식 또한 전문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것조차도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 변호사는 WTO가입을 계기로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정부의 정책결정,⁸⁾ 해외투자자와 외자유치 및 무역에서의 법률자문, 각종 법률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확장되었다.⁹⁾ 또한 WTO가입은 국가간 무역과 투자의 증대를 촉진시켜 법률시장에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종류의 증가, 신종업무영역의 증가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갈수록 양적·질적 양면으로 확대되고 있다.¹⁰⁾

3) 변호사의 국제경쟁력강화

WTO가입으로 중국의 변호사도 점진적으로 세계경제시장에서의 다양한 국제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중국 변호사의 국제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먼저, WTO가입은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외국시장을 개척하여 국제시장에서의 자유경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중국변호사가 중국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외국변호사업체도 중국변호사로 하여금 그 나라의 법

7) 賈午光·何敏, “入世後律師業”, 「中國律師」, 2000. 3, 14面.

8) 杜仰科, “加入WTO後, 廣東律師怎麼辦?”, 「律師與法制」, 2000. 5, 26面.

9) 중국에서도 변호사가 유망직종으로 부상하면서 변호사자격시험응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999년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자수가 1만명 정도 되었는데, 전국변호사통일고시에 응시한 사람의 수가 약 18만명에 달하였다.

10) 王同義, “狼來了, 怎麼辦”, 「中國律師」, 2000. 2., 39面.

무서비스시장 진입을 허용할 것이며, 이는 중국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국제화경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변호사의 중국 진입과 중국변호사의 해외무대에서의 경쟁은 중국변호사로 하여금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확장 하고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¹¹⁾

4.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의 현안

1) 법률문화변화상의 문제

중국이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법조계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의 변호사업계나 법률수요자들 중 상당수가 계획경제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계획경제시대의 관씨(關係)중심의 법률풍토 속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¹²⁾ 한편 법무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개입하여 법률분쟁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변호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예도 많았다.¹³⁾ 이러한 구습에서 탈피하여 법치사회에 적응력을 갖는 리걸 마인드를 시급히 착근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이다.

2) 법조전문성의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하의 변호사 수준은 매우 열악하였다. 현재 중국의 법조사회 현실을 보면, 변호사제도가 뒤늦게 부활되어 법률사무소의 발전이 초기발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11) 高宗澤, “抓住機遇, 積極對應”, 「中國律師」, 2000. 2, 37面.

12) 趙小魯, “WTO:中國律師業的機遇與挑戰”, 「中國律師」, 2000. 3, 18面.

13) 張崇峻·李利華, “律師管理機構改革探討”, 「律師世界」, 2000. 4., 33面.

로 외국의 법률사무소와 비교할 때 업무처리수준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80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변호사임시조례 제정으로 변호사업이 부활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1만명의 변호사가 9,000여 개의 사무소에서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법률사무소들 중 대부분이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소송에서 복잡한 사건에 대한 자문에 이르기까지 일괄 처리하고 있으므로,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서방국가들의 대형화·전문화된 법률사무소와 비교하면 경쟁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¹⁴⁾ 다음으로, 중국변호사의 학력수준이 낮은 편이고 외국어구사능력이 부족한 데다 새로운 법률업무를 처리한 경험도 일천하므로 국제법률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 현재 중국의 변호사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50%에 미치지 못하고, 국제법률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가 4,000명 정도에 불과하며, 이러한 변호사들이 대부분 대도시, 경제특구에 집중되어 지방중소도시에서 섭외법률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는 아주 드물고, 또한 중서부지구의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무서비스의 수준, 업무처리능력 및 업무영역이 경제특구 등 발달된 도시의 것들과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¹⁵⁾

3) 로 펴의 경영능력 및 우수법조인력확보상의 문제

현재 법률사무소의 경영시스템과 관리방식이 낙후되어 있다. 중국의 법률사무소 중 70%를 점하고 있는 국영법률사무소의 경우 이름만 있을 뿐 내실은 없고 인력과 자본의 운용에 대한 효율이 저조하며 장기적 발전계획이 부실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¹⁶⁾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세무기관이 이를 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확장기금 조성을 저해하여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¹⁷⁾

14) 賈午光·何敏, 前揭論文, 15面.

15) 陳業業, “入世對中國法律服務之影響”, 「律師與法制」, 2000. 1, 31面.

16) 趙小魯, 前揭論文, 19面.

17) 賈午光·何敏, 前揭論文, 16面.

중국의 WTO가입 후 외국법률사무소는 중국에 분사무소를 증설하면서 선진적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한 인재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며 현대화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최신 사무설비를 비치하고 있음에 비해, 중국의 법률사무소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변호사의 수입이 외국 변호사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경영시스템 또한 낙후되어 있는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환경이 개선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중국의 우수인재들이 외국법률사무소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¹⁸⁾

5. 중국의 법률시장개방 대응책

1)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의 원칙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법률서비스시장개방을 앞두고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有計劃有步驟地開放)’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변호사업계의 일각에서는 외국의 법률사무소가 WTO가입 이후 중국의 법무서비스시장에 진입하기까지 3년 내지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측하면서¹⁹⁾ 1992년 이후 외국법률사무소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해 온 그 허용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외국법률사무소의 업무허용범위, 사무소의 설치, 중국변호사의 고용과 동업 등에 관한 제한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²⁰⁾ 그에 앞서, OECD는 1997년 2월에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 대한 법률서비스시장개방문제와 관련하여, ① 변호사사무실의 설립형태 자유인정, ② 외국변호사와 내국변호사간의 동업에 관한 제한 철폐, ③ 국적요건 등 시장접근에 관한 제한 철폐, ④ 외국인의 투자제한 완화, ⑤ 거주요건에 관한 제한 철폐, ⑥ 자격상호인정을 위한 협조에 관하여 결의한 바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하여도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18) 周福民·洪晴, “中國律師業如何面對WTO”, 『中國律師』, 2000. 1., 9面.

19) 王同義, 前揭論文, 40面.

20) 趙小魯, 前揭論文, 19面

한편, 중국국적보유자에게만 중국변호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법적 제한을 철폐하여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중국법무서비스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이미 한바 있다.²¹⁾

2) 법률풍토의 쇄신과 변호사법제의 정비

중국은 법치이념보다 인적 관씨(關係)를 우선시하는 기존의 법률풍토를 쇄신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공정한 법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무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들이 불법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개입하여 법무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법의 집행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²²⁾

이와 함께, 중국은 법무서비스시장과 관련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도를 개정하고 정비함에 있어 높은 수준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실현 가능하고도 전망이 밝은 결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먼저, 중국은 WTO의 중국법무서비스시장에 대한 완전개방요구에 대하여 법률개정을 검토함으로써 중국과 WTO가 원칙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관된 정책과 법규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변호사관리제도를 심층연구, 그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변호사의 지위와 작용, 변호사의 업무와 권리의무, 자격과 직무활동, 관리체제 등을 포괄하는 중국적 변호사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³⁾

3)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국제경제가 날로 발달하고 무역규칙이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날, 소규모의 작업장 형태의 법률사무소로는 고도의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

21) 呂宮思, “開放有利于律師業的發展”, 『中國律師』, 2000. 3, 30面.

22) 張崇峻·李利華, 前揭論文, 34面.

23) 周福民·洪晴, 前揭論文, 9面.

되는 복잡다단한 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영향력 있는 국제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수의 우수한 인력과 첨단 전산시설 등 사무설비를 완비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우수한 인력이 세분화된 영역에서 고객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법률사무소와는 규모, 전문화, 기업화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선진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법률사무소의 규모확대와 전문화를 병행하고 아울러 다양한 사건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선진국의 국제법률사무소와의 경쟁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법무서비스의 국제경쟁은 주로 비송무시장에서의 경쟁, 특히 BOT방식 프로젝트,²⁴⁾ 건설관련 프로젝트, 증권관련 프로젝트 등과 같은 대형프로젝트에서의 경쟁이므로, 법률사무소의 발전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효율·규모·사무소의 명성 등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즉, 법무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중국법률사무소가 시장의 원칙에 따라 인재를 폭넓게 확보하고 전문영역을 가진 인재 풀(pool)을 형성하며 대규모의 법률사무소의 설립이나 변호사집단의 조직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률사무소의 명성을 창출해내야 하는 한편, 법률사무소의 내부시스템상으로는 법률사무소가 사건수임창구를 통일하여 전문변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등 외국의 업무처리방식을 참고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⁵⁾

24) BOT방식이란 개발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건설(build)을 한 후, 자본, 설비 등을 일정기간 운영(operate)하여 시행자에게 이전(transfer)하는 방식을 말한다.

25) 周福民·洪晴, 前掲論文, 9面.

국제경쟁에 착안하여 우수법률사무소를 선택한 다음 여기에 다른 법률사무소를 합병시킴으로써 기업화의 기초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먼저 수도, 직할시, 성정부 소재지, 특구와 연해개방도시의 대형 법률사무소 중에서 업무실적이 가장 우수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선정하여 국제화서비스의 모범사무소로 정한 후, 그 모범사무소로 하여금 우수법률사무소를 선정하여 연합하거나 합병하게 하고, 여기에 타지역의 법률사무소를 합병시킴으로써 인력, 규모, 자본 및 설비의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대형기업화의 기초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형법률사무소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경영의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서 ① 경영관리학의 연구와 실행을 강화하고, ② 중국 내에서 법률서비스국제화의 표준을 정한 다음 발전가능성이 있는 전문경영관리인재를 선발하여 외국에 견학과 연수를 보내며, ③ 외국법률사무소와의 교류 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의 전문경영관리인력을 초빙하여 국제적 운영을 추진하고, ④ 기업화된 대형법률사무소에게 국제적 수준으로 기업이미지 제고, 홍보, 광고, 시장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문회사 또는 상관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기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의 법률사무소로는 국호(國浩)변호사집단, 강달(康達)법률사무소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모범법률사무소에 대하여 기본설립자금, 세금, 관리, 광고 등의 각 방면을 혜택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그 때마다 이러한 법률사무소의 발전경험을 축적하여야 하며, 법률사무소의 전문관리인원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한 바 있다.²⁶⁾

4) 법조업무영역 확장

법률사무소의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하여, 混業經營 등을 시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한 국제회계사무소가 2,401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법률사무소도 고객에게 여러 방면의 양질

26) 寇衛東, “加入WTO與律師服務國際化”, 「中國律師」, 2000. 1, 11面.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적인 자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다양한 서비스제공도 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⁷⁾ 이와 같은 맥락으로, 법률서비스의 비법률화非法律化는 변호사업계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병기’라고 하면서 법률사무소는 기술사, 회계사, 금융 및 투자전문가, 의사, 컴퓨터전문가 등을 확보하여 전방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된 바 있다.²⁸⁾

5) 국제화에 적합한 변호사 양성과 재교육

WTO가입에 따른 국제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법률인재의 경쟁이라고 하면서 국제화에 적합한 전문변호사의 양성 및 변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국제화에 적합한 전문변호사의 양성방안으로서, ① 중국내에서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최신 법률지식강좌를 개설하며,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접 최신법률지식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고, 각 법과대학의 전문분야를 상당한 수준으로 육성하고, ② 국외에서는 연수와 유학을 위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국내외에서 전문인력의 양성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정부는 ① 유관부서와 변호사협회를 통하여 다수의 젊은 변호사들을 선발한 다음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② 외국법률사무소, 특히 외국대학과 협력관계를 설정하여 중국사정에 적합한 전문변호사양성계획을 수립하며, ③ 해외연수와 유학은 1~2년 범위 내에서 젊은 변호사들을 위주로 하되 학위교육과 연계시키며, 그 비용은 변호사가 부담하되 정부가 유학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주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²⁹⁾

셋째, 변호사감독관리부서와 변호사협회는 법규와 유관규정을 제정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³⁰⁾

27)李志強, “世界經濟一體化對法律服務的新要求”, 『中國律師』, 2000. 1., 13面.

28) 중국법상 변호사와 회계사 등 사이의 동업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寇衛東, 前揭論文, 10面).

29) 趙小魯, 前揭論文, 19面.

6. 결론

중국의 법률시장개방과 관련한 종합적 검토를 하였다. 사회주의계획 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된 중국에서의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세계화를 위한 규범의 세계통일화 흐름에 적응하려는 중국의 노력 또한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WTO와 OECD에의 가입은 세계시장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체제변화에 따르는 다양한 법률수요와 국제거래에서 나타나는 법적 분쟁의 효율적 제어를 위한 중국의 법조발전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런 중국의 환경적 변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사견으로는 중국의 법률시장개방은 물론 제반 시장개방에 있어서 대단히 적극적이고 대담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의 법무서비스시장 개방을 평가해보면, 중국은 1992년 5월에 외국법률사무소에 법무서비스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그 분사무소의 수가 폭증하고 있다. 외국법률사무소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다. 중국 정부는 WTO가입 이후에도 제한적으로 개방하였던 가입이전의 수준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有計劃有步驟地開放)'는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시장추가개방에 대한 실무협상에 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실무협상의 타결에 따라 외국법률사무소에 대한 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나아가 완전개방에 이르게 되는 경우 자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법률수요자들에 대한 법무서비스제공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내 법률시장에서의 국제경쟁도 치열하게 될 것이므로, 중국 정책당국 및 변호사업계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전문변호사의 양성과 재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사무소의 전문화,

30) 寇衛東, 前掲論文, 12面.

규모화 및 경영합리화를 기하며, 기존의 법률업무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도 새로운 법률업무영역을 개척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WTO가입으로 인한 세계무대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치(rule of law)가 인적관시(關係)에 우선시되는 법률문화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1994년 홍콩의 법률시장개방제도에서는 여전히 외국법률가나 외국회사로 하여금 개업면허를 소지한 홍콩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나 홍콩변호사와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고, 현지 홍콩회사나 제휴단체에 있어 외국법률가의 수가 현지 사무변호사의 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1:1 비율을 요구하는 등의 새로운 제한이 부과되며, 외국법률가의 업무수행 범위에 대한 제한 등 시장보호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

생각건대 외국회사에게 그 설립과 동시에 본국법 및 현지법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New York州의 법률시장개방제도와 비교할 때 홍콩의 현행 제도가 여전히 보호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거대 로펌과 급성장중인 중국법률회사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특수환경하의 홍콩이 취한 1994년 법무서비스시장 개방조치는 상당히 개방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법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당면문제 및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ATT의 규율대상인 상품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GATS가 관장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과 선진국의 국내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WTO체제를 운영하는데 한동안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주된 현안이 될 전망이다.

법무서비스의 경우에도 거대한 다국적 회계법인과 영미의 대형 로펌 등이 회계나 법률자문업무의 국제적 과점을 위해 시장개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MDP가 허용될 경우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DDA 협상은 2004년말까지 종료를 목표로 추진되었었다. 구미 각국은 자신들의 외국법자문변호사 시장은 충분히 개방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무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는데는 거리낌이 없다. 따라서 정부도 법무서비스시장 개방협상에서 수세적인 자세만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의 제도적 미비점을 체크하여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OECD에서 미국, EU, 일본의 변호사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시장개방에 대한 기본구조를 짜놓고 이에 근거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GATS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등이 법률시장 개방압력을 집중시켰던 일본은 이미 상당부분을 개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체제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른 분야에 대한 전면적 개방을 진행함에 따라, 법률시시장개방 또한 대세이다.

따라서 이제는 막바지의 개방협상일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향후 변호사 업계의 과제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변호사 업무의 공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기업법무·국제법무영역 등에서의 법부서비스수요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대한변협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학 교육제도의 개혁과 법무서비스의 전문화를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개방에 대비하여 법무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중국법률시장개방, 외국법자문변호사(FLC), 복수전문직간동업(MDP), 외국법률사무소임시규정 원자격취득국, 依法治國, 판시(關係), 有計劃有步驟地開放, 混業經營

참 고 문 헌

- 法院行政處, WTO와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1997.
- 鄭容相, 中國會社法論, PUFs, 2003.
- 賈午光·何敏, “入世後律師業”, 「中國律師」, 2000. 3.
- 高宗澤, “抓住機遇, 積極對應”, 「中國律師」, 2000. 2.
- 寇衛東, “加入WTO與律師服務國際化”, 「中國律師」, 2000. 1.
- 段正坤, “打開大門, 迎接挑戰”, 「中國律師」, 2000. 2.
- 杜仰科, “加入WTO後, 廣東律師怎麼辦?”, 「律師與法制」, 2000. 5.
- 範成蘭, “面對WTO, 中國律師準備好了嗎”, 「律師世界」, 2000. 2.
- 呂宮思, “開放有利于律師業的發展”, 「中國律師」, 2000. 3.
- 王同義, “狼來了, 怎麼辦”, 「中國律師」, 2000. 2.
- 李志強, “世界經濟一體化對法律服務的新要求”, 「中國律師」, 2000. 1.
- 張崇峻, 李利華, “律師管理機構改革探討”, 「律師世界」, 2000. 4.
- 趙小魯, “WTO: 中國律師業的機遇與挑戰”, 「中國律師」, 2000. 3.
- 周福民·洪晴, “中國律師業如何面對WTO”, 「中國律師」, 2000. 1.
- 陳業業, “入世對中國法律服務之影響”, 「律師與法制」, 2000. 1.
- South China Morning Post, 2000. 7. 26

<Abstract>

A Study on Liberalization of the Legal Marke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ung, Yong Sang

As Korea has been faced with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area of the legal services, the sector of the Korean legal services has experienced three major changes. First, large international accounting firms, the so-called Big 5, have made an attempt to enter the Korean legal market. Second, the size of the law firms of the US and the EU has been large and they have expanded their business abroad. Third, the WTO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pushed Korea for the deregulation of the sector of legal services. The current law of Korea prevents foreign law firms from establishing their branches in Korea.

In a degree, China has opened its legal market as foreign investment and trade in China has increased. China has been a member of the WTO since 11 December, 2001. China has made preparations for the entire opening of legal services market. In this context, China has made gradual efforts to improve legal environment, legal education, and legal system, so China plan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legal services in the near future.

It is imperative that our legal education system should be first reformed. In order to get over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area of legal servic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al services

and the sector of legal services must be more and more specializ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o respond to the gradually emerging changes of the Korean legal market.

In order to study the actual effects of the legal market reform, this article analyzes the ongoing reform of legal services market in China. Also, this article compares and contrasts historical reforms of legal market experienced in China. In view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this article suggests a strategy to reform successfully and to avoid making errors caused by a rapid and abrupt change in our legal system.